

연말·연초 임산물 해외판촉사업 공고문 (국내공모)

1. 사업목적

-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내 판촉행사(홍보마케팅, 시식, 프로모션) 지원을 통하여 한국 임산물 수출 및 입점 확대

2. 지원대상 / 품목

-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임산물 수출업체 / 품목 : 한국 임산물 및 임산가공식품 전반
- 행사국가의 현지 거래선(유통업체, 바이어 등)을 보유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 제외

3. 행사기간 : `22.12.1 ~ `23.2.28 / 3개월간

- ※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안내자료 참조

4.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비용지원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지원한도 : 최대 50백만원 한도(지원비율 : 80%)
※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규모,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배정금액 조정 가능(별도 통보)
- 사업의무 : 행사기간 동안 배정예산의 2배 이상 수출 의무
※ 사업의무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액 감액
※ 신규 수출국(최근 3년간 행사품목이 행사국가에 실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의 사업 의무액은 배정예산의 50%(0.5배) 이상

5. 평가 주요내용

- 계량(50점)·비계량(50점)·가점(5점)을 합산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내용 : 수출목표, 임산물 수출실적, 홍보 카탈로그 및 인증 등 사업 준비현황, 행사 적정성, 주관업체 현황, 신청서 충실도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미비 신청업체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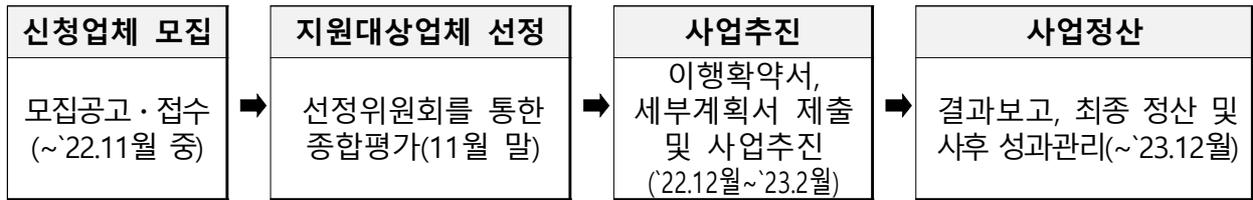
6. 신청안내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임산물 연말·연초 해외판촉사업 신청 → 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2.11.23.(수) 18:00 限**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압축하여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제출서류	
①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②	(선택) `21년 임산물 수출실적증명원(임산물 수출 품목에 한함) * 계량평가 20점
③	(선택) 행사품목 홍보 카탈로그(영문 또는 현지어, 없을시 국문 제출) * 계량평가 5점
④	(필수) 국내외 인증 취득실적(ISO, HACCP, GAP, GMP 등 2건 이상 제출) * 계량평가 5점
⑤	(선택) 무역통계정보동의서 온라인 제출 (기제출업체 생략가능)

6. 사업 추진절차



7.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임산물 수출 담당(061-931-0826, 0829 / imat@at.or.kr)

2022. 11.

붙임 1

2023년 임산물 해외판촉사업 정산기준

□ 공통기준

- 모든 사업비용은 해외 판촉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에 한함
-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aT와 협의 필요
 - * aT는 필요시 대금 입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각국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확정 증빙 첨부 불가시 사전 aT 본사 협의 필요
- 국내 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지원 세부 기준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입 점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수수료 - 품목등록비, 점포Listing Fee 이외 단순 매출수수료는 제외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수수료 및 계정가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 계약서(금액표시) ○ 온라인 플랫폼 발행 인보이스 또는 대행업체 발행 계약서, 인보이스 등 						
장 치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증빙서 및 실물 사진 						
홍 보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홍보에 집행된 비용 ○ 포인트+쿠폰, 배송료(온라인 시식용) ○ 증정품, 경품, 포인트+쿠폰+배송료 합산 금액 / 배정예산의 20% 한도 ○ 온라인매장 내 홍보(사이트 배너, 슬라이딩 등) 관련 제작 및 홍보비용 * 온라인 매장에서 발급된 증빙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내역 및 송금증 등 관련 증빙 ○ 제작실물 또는 실물사진 ○ 증정품 관리대장(수량명시), 사진 첨부 * 경품행사 진행시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 ○ 포인트, 쿠폰 등 마케팅 내역 및 관련 증빙 ○ 온라인 매장 내 제품 사진 및 홍보 현황 사진(캡처화면) 						
시식 행사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관련 홍보·판촉요원 고용관련 비용 (통역포함) ○ 국가별 지원한도(1일/1인)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일 본 : JPY25,000</td> <td>- 중화권 : USD150</td> </tr> <tr> <td>- 동남아 : USD150</td> <td>- 미 주 : USD250</td> </tr> <tr> <td>- 유 럽 : EUR250</td> <td>- 기 타 : USD20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징구 애로 시 해당국가의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대체가능 	- 일 본 : JPY25,000	- 중화권 : USD150	- 동남아 : USD150	- 미 주 : USD250	- 유 럽 : EUR250	- 기 타 : USD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고용업체 활용 시, 업체 발행 증빙서류 - 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등 * 인력업체 활용 시 신분증, 개인별 활동사진 생략가능 ○ 주관업체 직접고용 시 판촉요원 개인별 대금수령증 -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자 서명 날인 - 신분증 사본 또는 판촉요원 개인별 활동사진
- 일 본 : JPY25,000	- 중화권 : USD150							
- 동남아 : USD150	- 미 주 : USD250							
- 유 럽 : EUR250	- 기 타 : USD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용 식품은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10% 한도 ○ 시식관련 비품 구매는 소모품 구매가 원칙이며 자산성 비품의 구입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용 식품 증빙은 행사기간 동안 유통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영수증 또는 납품 증명서(유통매장 확인필) 제출 *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행사매장 시식행사 사진 첨부 						

- * 지원항목 세부기준은 판촉행사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본사 협의 필요
- * 영수증의 수신자가 보조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어떤 관계인지 결과보고서에 명기

□ 지원금액

○ 해외판촉사업 결과 통보문에 명시된 금액을 최종지원액으로 하며, 지원세부기준에 따라 정산 승인한 실 집행비용의 80% 지원 원칙

* 유통업체 직접 연계는 배정예산 이내 실 집행비용의 100% 지원

○ 단, 사업의무액을 미달성할 경우, 달성 비율(%)에 따라 최종지급액 감액

※ 최종지원액 = [정산 승인액(①×②) × 수출의무액 달성 비율(③)]
 ☞ (① 판촉사업 수행업체 실 집행비용 × ② 지원 비율) × ③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
 · 정산 승인액(①×②)은 당초 배정된 국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촉사업 수행업체 실 집행비용은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aT가 최종 승인한 집행비용을 의미

* 사업의무액 달성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예 80.488%→80.48)

□ 지원 한도 및 수출의무액 달성 여부에 따른 최종지원액 적용(예시)

[사업의무액 달성시] 정산승인액 ≥ 배정예산	[수출의무액 미달성시] 정산승인액 ≥ 배정예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배정예산 30백만원</td><td style="width: 50%;">지원 비율 80%</td></tr> <tr><td>실집행금액 60백만원</td><td>사업의무액 120%</td></tr> </table>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60백만원	사업의무액 12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배정예산 30백만원</td><td style="width: 50%;">지원 비율 80%</td></tr> <tr><td>실집행금액 60백만원</td><td>사업의무액 70%</td></tr> </table>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60백만원	사업의무액 70%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60백만원	사업의무액 120%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60백만원	사업의무액 70%								
= (60 * 0.8 = 48백만원 지원한도 30백만원 적용) →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 적용 = 30백만원 * 1 = 최종지원액 30백만원	= (60 * 0.8 = 48백만원 지원한도 30백만원 적용) → 달성 비율 70% 적용 = 30백만원 * 0.7 = 최종지원액 21백만원								
[수출의무액 달성시] 정산승인액 < 배정예산	[수출의무액 미달성시] 정산승인액 < 배정예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배정예산 30백만원</td><td style="width: 50%;">지원 비율 80%</td></tr> <tr><td>실집행금액 20백만원</td><td>수출의무액 200%</td></tr> </table>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20백만원	수출의무액 2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배정예산 30백만원</td><td style="width: 50%;">지원 비율 80%</td></tr> <tr><td>실집행금액 20백만원</td><td>수출의무액 30%</td></tr> </table>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20백만원	수출의무액 30%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20백만원	수출의무액 200%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20백만원	수출의무액 30%								
= (20 * 0.8 = 16백만원 정산지급액 16백만원 적용) →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 적용 = 16백만원 * 1 = 최종지원액 16백만원	= (20 * 0.8 = 16백만원 정산지급액 16백만원 적용) → 달성 비율 30% 적용 = 16백만원 * 0.3 = 최종지원액 4백 80만원								

□ 사업 의무액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의무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예산(국고지원액)의 2배 이상 수출입의무(또는 수입실적 증빙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의무액(단, 행사기간 한정)) 부여 -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서 제출하되, 인보이스 제출 시는 B/L 첨부 * 불가피하게 수입 증빙 제출이 어려울 시 협의 후 수입신고필증(이행완료) 제출 가능 - 중국지역의 경소상 연계 판촉의 경우, 거래관계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수입대행증명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증빙> - 국내공모 : 수출신고필증 - 해외지사 연계 : 수입허가(신고)서, 또는 수입증빙서 단, 직접연계

구 분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더 판촉의 경우에도 납품받은 사업자(거래관계 수입상)의 수입대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 - 신규수출국* 판촉의 사업의무액은 배정예산의 50%(0.5배) 부여 * 신규수출국 : 최근 3년간 행사품목이 행사국가에 실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p>판촉은 유통업체 발행 매출 증빙</p> <p>수입자(구매자)와 바이어 명이 일치해야 함</p>										
수출입 실적인정 기간 및 환율 적용	<p>○ 인정기간 : 국가별 운송기간 + 행사기간 전후 30일 + 행사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320 510 1209 591"> <tr> <td>국 가 별</td> <td>일본</td> <td>중화권/동남아</td> <td>미주</td> <td>유럽 및 기타</td> </tr> <tr> <td>운송기간</td> <td>7일</td> <td>15일</td> <td>30일</td> <td>40일</td> </tr> </table> <p>환율 : 해외판촉 행사기간 동안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송금(보내실 때) 평균환율 적용</p>	국 가 별	일본	중화권/동남아	미주	유럽 및 기타	운송기간	7일	15일	30일	40일	공통사항
국 가 별	일본	중화권/동남아	미주	유럽 및 기타								
운송기간	7일	15일	30일	40일								

□ 계획서 제출 및 행사기한

- 행사시작 2주 전까지 이행확약서(양식2) 및 행사 세부계획서(양식3) 제출
 - 제출처(aT 임산물 수출업무 대표메일) : imat@at.or.kr
 - * 해외지사 연계 판촉은 해당사항 없음
- 연말·연초 판촉은 '23.2월 말까지, 상반기 판촉은 '23.6월 말까지, 하반기 판촉은 '23.11월 말까지 완료 필수

□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 결과보고 제출 :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단, 11월 상순 이후 판촉 추진시 '23.12.11(월)까지 제출
- 제출서류 : 행사 결과보고서(양식4), 정산신청서(양식5-1), 지출 증빙, 수출입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서 등) 등
 - * 유통업체 직접연계의 경우 배정예산(국고지원액)의 2배 이상 수입실적(또는 수입 실적 증빙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의무액(단, 행사기간 한정)) 부여
- 판촉 운영요원 고용시 부가서류(양식5-2, 양식 5-3) 제출

□ 기타

- 행사국가, 매장, 품목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T(해외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 조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안내자료

1. 임산물 HSK 코드 * 별첨 : 산림청 소관 임산물 HSK 코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84개)
3. 임산물 가공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기 임산물로 가공한 제품
* 단, 임산물 가공품은 가급적 임산물 HSK 코드 품목과 함께 사업추진 권장
4.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21.8.6 개정)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 (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속,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옷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6)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